

-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3월 21일 입법예고하였으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.

【 행정적 검토 】

-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지역 사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재경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고자 2004년 11월 19일 제정공포되었음.
- 그동안 제천학사는 2005년부터 ~ 2007년까지 306명(매년 102명)의 재경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여 제천인재육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함.
-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12일 15시 제천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제기 되었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보호자가 일정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임.
-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문제되었던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여부 를 상당히 보완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, 제천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역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한정된 학사 인원에 대하여 주민등록 거주자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(예정자)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운영규정등 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답변 요지 : 없음.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